

# 종자산업법상 주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종자업자에 대한 주요 과태료 처분

위 반 행 위	과태료(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종자업자(판매자 포함)가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9조의3 위반)	종자업자				
	100	300	500	700	1,0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5조)	종자판매자				
	100	200	300	400	5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5조)	100	300	500	700	1,000

## 종자/육묘업자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위 반 행 위	행정처분		
	1회	2회	3회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8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를 판매·보급한 경우 (법 제43조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 묘목 생산·판매 시 과수화상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울곡동)

종자업·육묘업 등록 문의 054-912-0166  
 종자·묘 부정·불법 유통 신고 054-912-0169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054-912-0115

## 지역별 문의전화

수도권(경기) T. 031-8058-2000  
 강원지원 T. 033-433-2515  
 충북지원 T. 043-649-3731  
 충남지원 T. 041-540-4114  
 전북지원 T. 063-530-3650  
 전남지원 T. 061-323-0702  
 경북지원 T. 054-858-9662  
 경남지원 T. 055-355-2578  
 제주지원 T. 064-900-3014  
 동부지원 T. 033-336-6246  
 서부지원 T. 063-862-7667



과수묘목도 종자에  
해당합니다.



# 과수묘목 판매·구입 시 주의사항



# 과수묘목을 판매·구입하실 때에는 꼭 확인해주세요!



## 종자란?

증식·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 과수묘목은 '종자'에 해당됩니다.

과수묘목을 판매·구입하실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종자업 등록
- 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3 품질표시
- 4 가격표시



## 1 종자업 등록



종자(묘목 포함)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7조)

### 시설기준

- 1) 묘목포장(苗木圃場) : 7,000㎡ 이상일 것
- 2) 어머니나무 :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머니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머니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작물(9)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과수묘목 생산·판매이력 제도 시행

종자의 생산·판매이력의 기록·보관 의무화(종자산업법 제39조의3)

#### 종자업자 기록·보관해야 하는 생산이력 (2024년 6월 28일)

- 종자의 생산과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출처
-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 종자의 수량
- 종자의 생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품종명
- 생산업체의 명칭 또는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 기록·보관해야 하는 판매이력 (2023년 12월 28일)

- 종자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종자의 품종명
- 종자의 판매수량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종자(묘목 포함)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종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8조)

### 신고방법

우편/방문/온라인  
[www.seednet.go.kr](http://www.seednet.go.kr)

### 신고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신고하지 않은 품종의 묘목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3

### 유통종자(묘목)의 품질표시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43조)  
<규격묘 표시(종자관리요강 별표15, 10x3cm 이상)>

#### 앞면

규격묘의 품질표시			
① 작물의 종류	② 품종명	③ 대목명	
④ 업체명 (종자업 등록번호)	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	⑥ 생산년도	
⑦ 묘목수량	⑧ 수입년월일	⑨ 수입자명	
⑩ 주요병해충 유무			

#### 뒷면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 표시방법

최대 10주 단위로 위 양식에 맞는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되, 종자업자-최종 소비자간 직거래 시 각 품종별로 하나의 품질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규격묘의 규격기준(종자관리요강 별표14)>

작물	길이(cm)	직경(mm)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사과			근두암중병(뿌리혹병) : 무
- 이중접목묘	120 이상	12 이상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140 이상	12 이상	
배	120 이상	12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 무
복숭아	100 이상	10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 무
포도			근두암중병(뿌리혹병) : 무
- 접목묘	50 이상	6 이상	
- 삽목묘	25 이상	6 이상	
감	100 이상	12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 무
감귤류	80 이상	7 이상	괘양병 : 무
자두	80 이상	7 이상	
매실	80 이상	7 이상	
참다래	80 이상	7 이상	역병 : 무

## 4

### 가격표시



과수묘목 판매 시 개별 상품별로 또는 별도 가격표시판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